

재단법인 경북창조경제 혁신센터의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심 사 보 고 서

1. 소관기관 및 부서 : 경상북도 경제산업국

2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3년 2월 24일, 경상북도지사

나. 회부일자 : 2023년 2월 28일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

- 제338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
(2023년 3월 14일 상정,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토론, 의결)

3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경제산업국장 이영석

나. 제안이유

-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이
전부 개정('22.06.29. 시행)되어 현행 법령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려
는 것임

다. 주요내용

- 기술창업 활성화 전담기관 지정의 근거 법령 개정(안 제1조)
- 공무원 파견에 대한 근거 법령 삭제 및 일부 개정(안 제2조제1항)
- 정책수립 및 유관기관 협력체계 관련 근거 법령 삭제 및 일부 개정(안 제2조제2항)
-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출연금 등 지원에 관한 근거 법령 개정(안 제3조제1항)

4. 검토보고의 요지(수석전문위원 장영두)

가. 조례 개정의 필요성

-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및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 전부개정에 따라 현행 조례의 해당 조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의 적법성이 인정됨

나. 주요내용

- 안 제1조(목적)는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“제4조의7제2항”을 “제52조제1항”으로 개정함
- 안 제2조(행정지원 등)는 조의 제목을 “행정지원 등”에서 “행정지원”으로 하고, 제1항의 “행정지원을 하거나,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의7제3항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”를 “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”로 개정하며, 제2항의 “영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센터가”를 “센터가”로 개정함
- 안 제3조(출연금 등의 지원)는 제1항 중 “「중소기업창업 지원

법」 제4조의7제4항”을 “ 「중소기업창업 지원법」 제52조제3항”
으로 개정함

다. 종합검토의견

- 창조경제혁신센터는 「중소기업창업지원법」 제52조(지역창업 전담기관의 지정)*에 근거한 것으로서,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에 따라 '14.12.17. 구미시에 설치되었음

< *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2조(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) 요약

-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(이하 “지역창업전담기관”이라 한다)을 지정할 수 있다.
-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.
 1.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·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
 2.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 3.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·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
 4. 지역의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, 금융,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
 5. 창의적인 아이디어,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
 6. 중소벤처기업부장관,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
 7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

- 조직현황은 '23년 1월 현재 3본부 5팀(총35명)으로, 협력기업으로 삼성전자(전담대기업), 인탑스, 포스코, SK-Eco 등이 있고, 예산규모는 100.7억원(지방비 14.6억원)으로 운영중임
- 금번 조례안 개정은 상위법령의 전부개정('22.06.29)에 따라 조례의 해당 조문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법적 타당성이 인정됨
- 다만 안 제2조의 개정내용 중 '소속 공무원 파견'은 경상북도와 구미시에서 센터가 설립된 2014년부터 2018년까지는 기관운영의 조기정착을 위해 소속 직원을 파견하였으나 2019년부터는

실적이 전무한 바 조례의 개정에 따른 영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됨

5. 질의 및 답변 요지 : 생략

6. 토론 요지 : 없음

7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

8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9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

10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